

탄 원 서

사건번호 : 2022초기1795

사건명: 위헌심판 제청

피고인 : 두성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성민

탄원인 : 000 외 연명인

재판장님 상기 탄원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7명, 일 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끔찍한 현실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몇십만 원짜리 자동 멈춤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위험이 이미 널리 알려진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러한 끔찍한 현실의 반복은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말단관리자만 ‘꼬리 자르기’로 처벌하고, 평균 벌금이 420만 원인 ‘숨방망이 처벌’이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일터에서 최소한의 법이 준수되도록 해서,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절절한 요구입니다. 10년간의 입법 추진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 피해자 유족의 곡기를 끊은 단식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2022년 지금도 ‘국민의 78%는 이 법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국민의 56%는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말단관리자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80%가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호주 캐나다 등이 사망시 25년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무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안전점검을 성실히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협이나 사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경영책임자 의무를 10여 개가 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명확성의 원칙 등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두성산업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 1년이 넘는 기간

이 있었으나, 법의 이행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니다.

재판장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사회가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넘쳐나는 참혹한 현실을 끊어내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두성산업 주식회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0월 00일

탄원인 000외 00명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귀중

[두성산업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엄정처벌하여 주십시오.]

연번	이름	생년월일	주소 (동까지)	연락처	서명
1					
2					
3					
4					
5					